

● 제306회 ●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3120)

2022. 4.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박순규 의원 발의]

의안번호 3120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박순규 의원 (찬성 13명)
- 나. 제출일자 : 2022년 3월 10일
-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16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 2021년 1년 동안 유기·유실되어 보호 조치된 동물은 개 2,784마리를 포함하여 5,605마리이고 이 중 2,273마리가 입양 또는 기증되었음.
- 한번 유기된 동물이 또다시 학대를 받거나 유기되지 않고 분양·기증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며 걱정하게 살아가도록 분양·기증을 받는 자에게 시장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분양·기증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며 걱정하게 살아가도록 분양·기증을 받는 사람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안 제15조제2항)

나. 유기 동물의 입양 시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사육·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함.(안 제16조제5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취지

- 동 개정안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이 유기된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 및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반려동물의 유기와 유실 방지 등을 위해 동물등록제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전국에서 128,717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실·유기동물은 입양(32.5%), 자연사(25.8%), 안락사(15.7%) 순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¹⁾
- 또한 소유자의 부주의, 구매 후 변심, 생활의 어려움, 관리비용의 증가, 반려동물의 질병과 노약 등의 이유로 유실 및 유기되는 반려동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동물 학대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²⁾
-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유가구 가운데 사육 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시작한 가구가 24%에 달하며 유기충동을 경험한 사람은 42.6%에 달하는

1) 동물자유연대(2022). 「2021 유실유기동물 보고서」. 동물자유연대 이슈리포트. 2022.01(11).

2) 김현중, 이정민, 이형용 (2019).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1-196.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³⁾

- 따라서 유실·유기동물을 최소화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반려동물 입양 전에 관련된 사전교육이나 적절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

1) 유기동물 입양교육 지원(안 제15조제2항 관련)

- 동 개정안은 시장이 분양·기증받는 사람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임.
- 반려동물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반려동물을 구입 가능한 환경이 동물유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구입이나 입양 시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⁴⁾
- 이와 관련해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수립된 시행계획 안에는 반려동물 교육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⁵⁾
 - 해당 계획에 따르면 입양전 교육과 반려동물 돌봄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⁶⁾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유기동물 입양에 필요한 기초지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3) 유기영(2017), 서울시 반려동물센터 도입방안, 정책리포트 222, 서울연구원.

4) 박효민, 박서연 (2019). 반려동물 정책의 쟁점과 대안. 이슈&진단, 1-25. 경기연구원.

5)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4008 (22.2) “「동물 공존도시 서울」 2022년 시행계획.

6) 해당 교육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 마포)에서 대면교육으로 진행하였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함.

- 최근 3년간 교육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입양교육을 수강한 서울시민은 전년대비 약 3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반려동물 교육 추진실적

프로그램명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171명	2,013명	2,337명
입양교육	132명	123명	429명
돌봄문화 시민교육	469명	1,068명	742명
사회화 교육	224명	377명	166명
행동교정	75명 (60회)	44명 (25회)	300명(60회)
특강교육	271명 (11회)	401명 (3회)	389명

- 동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교육의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음.

2) 동물을 분양·기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확대(안 제16조제5항 제3호 관련)

- 동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제20조 등⁷⁾에 따라 시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분양·기증할 수 있는 대상에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할 수 있는 자” 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 현행 「동물보호법」 제21조⁸⁾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7)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8) 「동물보호법」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

시장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애호하는 자’ 등에게 분양·기증”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물을 애호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동물을 애호하는 자’를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개정을 통해 시장이 동물을 분양·기증할 수 있는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입양된 유기동물이 다시 유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는 등 동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종합의견

-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해 유기동물의 수도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유실·유기동물 입양 전 교육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유실·유기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수 있음.⁹⁾

문 의 처

도미화 입법조사관 (02-2180-8147)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9) ‘21년 9월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도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반려동물 입양 관련 사전교육이나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음.